

제409회 정례회

'23. 6. 9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5월 26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-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,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결과 공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(안 제8조)
-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함(현행 제18조)
-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
-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20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는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,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.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조례에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8조는“의견수렴 결과”를“의견과 반영결과”로 수정하여 결과 공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현행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2019년 이후로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9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에 포상

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규정을 두고도 실행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